#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6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 박대출·김상훈·김희곤

권영세 · 김석기 · 이주환

황보승희 · 홍석준 · 이만희

박성민 · 정동만 · 최승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주소 노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사정 상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 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할 수 없도록되어 있어,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등 2차 폭력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교부신청은 예외적으로 채권·채무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을 제한하여 가정폭력피 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로, "중에서"를 "또는 가정폭력행위자 중에서"로, "세대원"을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열람 또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를 "가정폭력피해자등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 부) ① ~ ⑤ (생 략) 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 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 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 정폭력행위자(이하 이 조에서 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 가정폭력행위자 중에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 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 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 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 한<u>다)</u>----. 록 신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⑦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 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 정폭력피해자등의-----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 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

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8·9 (생 략)	8· 9 (현행과 같음)